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·②(생략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9.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9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0. S클래스 수익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결영 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</u></p> <p><u>11. Cp클래스 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</p> <p><u>12. Cp-E클래스 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</u></p> <p><u>13. Cp2클래스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</u></p> <p><u>14. Cp2-F클래스 수익증권 : 퇴직연금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</u></p> <p><u>15. S-P클래스 수익증권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결영 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</u></p>

	<p>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청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p>
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~9.(생략)</p> <p>②~⑤(생략)</p>	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~9.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S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11. Cp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12. Cp-E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13. Cp2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14. Cp2-F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15. S-P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②~⑤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0조(보수)</p> <p>①·②(생략)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9.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제40조(보수)</p> <p>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S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9.0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3.5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</p> <p>11. Cp클래스 수익증권</p>

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9.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7.2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</p> <p>12. Cp-E클래스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9.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3.6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</p> <p>13. Cp2클래스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9.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7.0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</p> <p>14. Cp2-F클래스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9.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5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</p> <p>15. S-P클래스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9.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2.8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</p>
<p>제41조(판매수수료)</p> <p>①·②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41조(판매수수료)</p> <p>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제34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</p>

<p><신 설></p> <p>③제2항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.</p>	<p>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,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“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”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(수익증권 환매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S클래스 수익증권 : 3년 미만 환매 시, 환매금액의 100분의 0.15 이내</p> <p>⑤ 제2항의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제4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.</p>
<p>제42조(환매수수료)</p> <p>①(생 략)</p> <p>②환매수수료는 ‘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‘이익금’이라 한다)’ 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p> <p>2. 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p>	<p>제42조(환매수수료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환매수수료는 ‘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‘이익금’이라 한다)’ 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A클래스, Ae클래스, C1클래스, C2클래스, C3클래스, C4클래스, Ce클래스, I클래스, W클래스, S클래스</p> <p>가.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p> <p>나. 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p> <p>2. Cp클래스, Cp-E클래스, Cp2클래스, Cp2-F클래스, S-P클래스 : 환매수수료 없음</p>

<p>③(생략)</p>	<p>③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6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③~⑤(생략)</p>	<p>제46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</p> <p><u>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.</u></p> <p><u>④~⑥(호변경)</u></p>
<p>제51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</p> <p>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“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”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</p>	<p>제51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</p> <p>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“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”(Cp클래스, Cp-E클래스, S-P클래스의 경우에는 “연금지축계좌설정상관”)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</p>
<p><신설></p>	<p>부칙</p> <p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5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</p>